



Australian Government

호주 정부의 인신매매 금지 전략 (Australian Government Anti-People Trafficking Strategy)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복잡한 범죄이며 인권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범죄와 싸우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밀입국과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인신매매는 사기, 강압, 폭력을 통해 사람들을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인신매매범들은 목적지 국가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밀입국은 요금을 받고 사람들을 월경시키는 조직화된 불법 행위입니다.

인신매매의 성격과 그 범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지만, 인신매매가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치된 여론입니다. 인신매매의 성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신매매의 형태는 여성과 어린이의 성적착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환대업, 건설업, 임업, 광산업 또는 농업, 가사 노동 및 노동 착취공장에서의 강제노동, 그리고 불법 입양, 거리 구걸, 강제 의용군이나 무장군 징용, 장기 적출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대응

호주는 2004년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비준하고, 그를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2005년에 비준했습니다. 호주는 강력한 이민 통제 정책과 지리상으로 고립된 위치 때문에 사람들을 인신매매하여 들여올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주로 아시아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의 종착국 중 한 곳입니다.

호주의 인신매매 금지 전략은 2003년부터 4년에 걸쳐 기초 예산 2천만 달러를 들여 수립되었습니다. 2007-2008년 정부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을 위한 2,630만 달러를 포함한 추가 예산 3,830만 달러가 4년에 걸쳐 배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인신매매 금지 전략은 구인에서 재합류까지 인신매매의 전 주기를 다루고 있으며 예방, 탐지와 조사, 기소와 피해자 지원과 같은 주요 분야에 골고루 비중을 둡니다.

핵심 조치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신매매 운영을 조사하는 호주 연방 경찰 전담팀.
- *강제성매매를 위한 여성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가 치안 전략 (National Policing Strategy to Combat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 인신매매 피해 혐의자를 위한 비자 조치.
-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 조치.

- 인신매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태국, 중국, 필리핀의 상임 이민관 준수(Senior Migration Officer Compliance) 직위.
- 인신매매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목표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인식 전략(Communication Awareness Strategy).
-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개선 법안.
-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지역 협력 증가.
- 자금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를 위한 연방검찰총장(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지원.
- 노동자 인신매매를 포함한 지역 내 인신매매 동향 연구.
-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국 및 재합류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 및 인신매매 비자 제도 변경 사항

2009년 7월 1일, 호주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Program)* (이하 ‘프로그램’)과 인신매매 비자 제도(Visa Framework) (이하 ‘비자 제도(Visa Framework)’)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호주 내 인신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협정의 프로그램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평가 과정 (Assessment Stream) –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처음 30일 동안 집중 지원 제공.
- 사법 지원 과정 (Justice Support Stream) – 인신매매 조사 및/또는 기소의 최종 단계까지 지속적인 지원 제공.
- 임시 공판 지원 과정 (Temporary Trial Support Stream) – 인신매매 관련 기소 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에 되돌아온 재판 의뢰인(Client)에 대한 집중 지원 제공.

비자 제도(Visa Framework)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브리징 F 비자 (Bridging F visa).
- 형사상 체류 비자 (Criminal Justice Stay visa).
- 증인 보호 (Witness Protection) (인신매매) (임시).
- 증인 보호 (Witness Protection) (인신매매) (영구).

기존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과정 지원을 받을 때 비자 제도(Visa Framework) 하에서 비자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비자 제도(Visa Framework) 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와 분리된 피해자 지원(De-linking victim support from visas)

기존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인신매매 비자 제도(People Trafficking Visa Framework)에 의해 특정한 유형의 비자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더욱 광범위한 유연성을 주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피해자들이 두 번째 단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비자 취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2. 평가 과정(Assessment Stream)과 브리징 F 비자(Bridging F visa)의 유효기간이 최대 30일에서 최대 45일로 연장.

기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최고 30일 동안 유효한 브리징 F 비자(Bridging F visa)를 발급받고, 역시 30일 동안 지속하는 초기 *평가 과정(Assessment Stream)*을 통해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유효한 비자를 지닌 모든 피해 혐의자는 45일 동안 프로그램 *평가 과정(Assessment Stream)*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피해자가 불법 입국자일 경우 45일 동안 브리징 F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연장된 회복기와 자신의 선택안(option)을 가능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체 평가 과정(Assessment Stream)은 이제 인신매매 범죄 조사와 기소를 도울 의향이나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됩니다.

3. *인신매매 범죄 조사와 기소를 도울 의향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90일 동안 지원.*

기존에는 인신매매 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도울 능력이 없고 다른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호주에 남을 수 없는 피해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형법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나 그럴 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프로그램 하에 최대 90일간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가 과정(Assessment Stream) 하에서 45일 지원, 새로운 연장 집중 지원 과정(Extended Intensive Support Stream) 하에서 45일 지원). 이 연장된 지원 기간은 사례별로 제공되며, 정신적 외상과 같은 의학적 상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으면 최대 45일간 유효한 브리징 F 비자(Bridging F visa)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프로그램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위한 20일간의 전환 기간*

기존 제도하에서 프로그램을 떠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전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변경된 정책은 이제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시켜 프로그램의 모든 피해자에게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합니다.

5. *임시 및 영구 (인신매매) 증인 보호 비자(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s))를 영구비자 하나로 통합시키는 한편, 호주 안팎의 피해자 직계가족을 포함.*

기존에는 인신매매 관련 조사나 기소에 상당한 공헌을 했거나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증인 보호 (임시) 비자(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Temporary) visa)를 신청하도록 권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 권유에는 호주에 있는 해당 피해자의 직계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임시 비자는 3년 동안 허용되었고, 3년째 되는 해에 영구 비자로 전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비자 제도(Visa Framework)는 임시 비자를 폐지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그 대신 바로 영구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주 안팎의 직계 가족들도 이제 이러한 비자 신청 권유에 포함됩니다.

6. *(인신매매) 증인 보호증명서(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Certificate) 발급요건을 조사에 대한 “상당한 공헌”에서 “공헌”으로 낮춤.*

기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증인 보호 증명서(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Certificate)를 검찰총장(Attorney-General)으로부터 발급받아야만 (인신매매) 증인 보호 비자(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인신매매 사건의 조사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 긴밀한 협력을 하면 발급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이 증명서 발급 요건이 ‘상당한 공헌’에서 ‘공헌’으로 낮추어졌습니다.

7. 독자적인 촉매활동을 통해 (인신매매) 증인 보호 비자(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 절차를 기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 시작.

기존 제도하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이들의 호주 내 직계 가족들은 기소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인신매매) 증인 보호 비자(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호주 안팎의 이들의 직계가족들은 독자적인 촉매활동을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신매매) 증인 보호 비자(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